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2019. 9.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준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120
----------	--------

2019. 9. 24.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주택과)

나. 제 출 일 : 2019. 9. 9.

다. 회 부 일 : 2019. 9. 10.

### 2. 제출이유

쾌적한 주거문화 선도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 주택 인증제' 추진과 관련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인증 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영구임대주택 공동수도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계획 수립(안 제2조제1항)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 사업비 지원(안 제3조)

- 사업비 지원 비율 : 50% (자치구 부담률:공동주택 부담률 = 50:50)

다.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수도료 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4조제1항제1호타목)

라. 미세먼지 저감 인증 시설 사업에 대한 구 비용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조제1항제3호)

마.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서식 정비(안 별표1)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동주택관리법」
- 2)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서)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19. 8. 1.~ 8. 21.(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갈수록 악화되어 주의 및 경보발령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좀 더 쾌적한 주거문화 선도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실천적 지원을 위한 사항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용 수도요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계획 수립 근거 규정(안 제2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미세먼지 저감 인증 시설 사업에 대한 구 비용 지원 범위 사업을 규정(안 제4조제1항제3호)
-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사용 수도요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4조제1항제1호타목)

####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악화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여 녹색도시 구현에 선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2019. 3. 28.)을 계기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사용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관내 53%가 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시설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하여는 시설별 장단점과 미세먼지 발생의 계절적·시기적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공동사용 수도요금 지원<sup>1)</sup>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사항)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실시 보도자료<sup>2)</sup> 배포.(2019. 5. 3.)

1) 공동사용 수도요금 규정 반영 : 11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2) 매일일보 2019.5.3. [마포구‘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추진”]

<표 1. 마포구 주택 현황>

구 분	층 수	동 수	총 가구수 (호, 세대)	비고
합 계			136,280	
단독	지상2층 이하	6,529	6,529	
	지상3층	663	663	
	지상4층	284	284	
	지상5층 이상	86	86	
다가구	지상2층 이하	1,853	7,264	
	지상3층	2,044	13,017	
	지상4층	657	3,517	
	지상5층 이상	247	1,226	
다세대	지상2층 이하	796	4,271	
	지상3층	621	4,329	
	지상4층	973	7,952	
	지상5층	1,552	14,552	
	지상6층 이상	116	1,510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지상2층 이하	-	-	
	지상3층	-	-	
	지상4층	4	30	
	지상5층	31	330	
	지상6층 이상	103	1,386	
연립주택	지상2층 이하	133	738	
	지상3층	190	1,699	
	지상4층	85	1,336	
	지상5층 이상	14	252	
아파트	지상5층	22	618	
	지상6층 이상	878	64,691	

#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7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